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26일, 김재원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11. 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4. 11. 20)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1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11. 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재원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두고,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현행법상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영상물등급위원회 업무의 중요성과 윤리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볼 때, 전문성과 경험 등을 가진 위원이 안정적으로 선임되도록 위원의 구체적인 선임기준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위원 선임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7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3조(구성) ① (생략)	제7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영상물등·청소년·법률·교육·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u>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u>	② ----- ----- ----- ----- ----- ----- <u>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하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라 한다)</u> ----- -----.
③ <u>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③ <u>대한민국예술원회장은 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 청소년, 법률, 교육, 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 형평</u>

<신 설> ④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u>으로 정한다.	성을 고려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를 <u>영상물등급위원회</u> 위원으로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은 제3항에 따라 <u>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u> 추천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u>영상물등급위원회</u> 위원을 위촉한다. 1. 추천 대상 분야의 적절한 분포 2.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종사 경력 3. 성(性) 및 연령의 균형. 이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_____ _____ <u>대통령령</u> -----.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73조¹⁾에 따르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문화예술·영상물 등 각종 분야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구성)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영상물등·청소년·법률·교육·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 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서 대한민국예술원²⁾ 회장의 추천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함.
같은 조 제3항은 이 경우 성(性)과 연령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그 외에 위원의 선임기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²³⁾ 제1항은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각 분야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후보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그 후보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건의
2.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3. 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4. 예술원상 수여
5. 그 밖에 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 ① 예술원은 예술원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정수는 100명으로 한다.

③ 예술원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를 두고,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제4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이며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제8조(회장·부회장의 선출 등) ① 예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장·부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예술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예술원을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 ①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하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라 한다)은 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 청소년, 법률, 교육, 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을 위촉한다.

1. 추천 대상 분야의 적절한 분포
2.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종사 경력
3. 성(性) 및 연령의 균형. 이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추천 대상 분야의 적절한 분포, 전문성, 경력, 성(性) 및 연령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업무의 중요성과 윤리성 및 공공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과 경험 등을 가진 위원이 안정적으로 선임되도록 위원의 구체적인 선임기준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선임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봄.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등 영화·비디오물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해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만을 받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으므로,⁴⁾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추천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삭제하고 각 분야별 단체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바,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그 밖에 개정안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4)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1997년에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 1996년 영화 사진심의 위헌 판결 → 1997년 등급분류 제도 도입,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 → 2009년 전문성과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해 위촉권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

사항에 불과하므로 유사 입법례⁵⁾ 등을 참고하여 현행과 같이 영상물 등급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바,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한편, 개정안과 같이 현행 대통령령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도 안 제73조제3항 및 제4항의 내용이 기존에 법률로 규정되어 있던 같은 조 제2항의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일부 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박정하 소위원장)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 절차를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문화산업·청소년·법률·교육·언론·정보통신·역사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⑥ (생략)

⑦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7. 심사결과

수정의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을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각 분야 단체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한편, 그 밖에 체계 및 자구를 정비함(안 제73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3조제2항 중 “사람”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은 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 청소년, 법률, 교육, 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으로, “분야별 형평성을”을 “호의 사항을”로, “20명 이상 30명 이하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를 “구성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1. 추천 대상 분야의 적절한 분포
2.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종사 경력
3. 성(性) 및 연령의 균형. 이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73조(구성) ① (생략)	제7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제73조(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영상물등·청소년·법률·교육·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u>사람</u>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 ----- ----- ----- ----- ----- ----- ----- ----- ----- ----- 대한 민국예술원회장(이하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라 한다)- ----- ----- -----.	② ----- ----- ----- ----- ----- ----- ----- <u>사람으로서</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u> ----- -----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u> <u>이</u> -----.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	③ <u>대한민국예술원</u> 회장은 제2항에 따라 <u>문화예술,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u>	③ <u>영상물등급위원회</u> 의 위원은 다음 ----- <u>호의 사항을</u> ----- <u>구성하여야</u>

야 하며 위원의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광고·선전물, 청소년, 법률, 교육, 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

-----.

1. 추천 대상 분야의 적절한 분포
2.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종사 경력
3. 성(性) 및 연령의 균형. 이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

④ 그 밖에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영상물 등급위원회규정으 로 정한다.	라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이 추천한 사 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 영상물등급위 원회 위원을 위촉 한다. 1. 추천 대상 분야 의 적절한 분포 2. 해당 분야의 전 문성과 종사 경력 3. 성(性) 및 연령 의 균형. 이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이 전체 위원 수의 3 분의 2를 초과하 지 아니하여야 한 다. ⑤ 그 밖에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영상물등 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삭 제>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중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 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를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추천 대상 분야의 적절한 분포
2.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종사 경력
3. 성(性) 및 연령의 균형. 이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3조(구성) ① (생 략)	제7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 · 영상물등 · 청소년 · 법률 · 교육 · 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 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u>사람</u> <u>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u> <u>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u> <u>추천에 의하여</u>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다.	② ----- ----- ----- ----- ----- <u>사람</u> <u>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u> <u>에서</u> ----- -----.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u>성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u> <u>여 구성하여야 하며</u> <u>위원의 선</u> <u>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u> <u>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u> <u>구성하여야 한다.</u> 1. <u>추천 대상 분야의 적절한 분</u> <u>포</u> 2. <u>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종사</u> <u>경력</u> 3. <u>성(性) 및 연령의 균형. 이</u> <u>경우 남성 또는 여성이 전체</u> <u>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u> <u>아니하여야 한다.</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